

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14일		
신청인	상호(명칭)		대표자 성명	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팩스번호	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			
심사종류	최초인증심사 ☐ 갱신인증심사 ☐ 중간인증심사 ☐ 임시인증심사 ☐					
심사사유	※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					
주사무소	총인원	명	분사무소	사무소명:	명	
				사무소명:	명	
	부서	개		사무소명:	명	
				사무소명:	명	
운항선박의 종류	여객선	척	고속여객선	척	고속화물선	척
	산적화물선	척	유조선	척	화학제품운반선	척
	가스운반선	척	이동식해양구조물	척	그 밖의 화물선	척
안전관리적합증서 유효일		심사희망일 및 장소				
선종별 선적국		※선박의 기국과 선박의 종류를 기재합니다.				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 인증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 귀하

첨부 서류	1. 공통 제출서류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. 다만,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가.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. 「해운법 시행규칙」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. 그 밖에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개별 제출서류 가.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)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2) 사업개요·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)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.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: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다.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)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1부 2)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(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1.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: 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. 정부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: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
-------	---	---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계획 수립	→	심사실시	→	결재	→	증서발급	→	교부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	---	------	---	----	---	------	---	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정부대행기관